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25438]  
의견서**

**2023. 12.**

**(사) 오픈넷**



**대표자: 강정수**

**주소: [우]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01호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 1. 본 개정안의 요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438, 이하 ‘본 개정안’)은, 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부분의 위헌성

- 현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정보의 유통이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함. 그러나 다른 해악이 없이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음.
- 어떠한 표현의 내용이 ‘의견’인지 ‘사실’인지를 구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하여 조작·은폐되어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일정한 사실의 주장자가 당시까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될 수 있고, 이에 진실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조차 함부로 규제될 위험이 큼. 따라서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헌법재판소 역시 이와 관련하여 일명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결정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

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는 보충의견을 낸바 있음.

- 표현 내용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실제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과 같이 사람의 내심의 의사, 의도를 기준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은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표현물 규제로써 규제기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과도한 표현물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 할 것임.

###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 부분의 위헌성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은 사람의 신체나 음성이 나오는 콘텐츠라면 모두 이에 포함될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 음성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든 영상물, 음성물은 원본 전체를 게시하는 것이 아닌 한 부분 편집, 시간·순서 편집, 자막·이미지 처리 등의 ‘편집·가공’ 작업이 수반되므로, 이는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결국 출연하는 사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되는 모든 영상, 음성 콘텐츠들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된 정보’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또한 딥페이크만을 규제하고자 하는 의미로 선해하더라도, 해당 표현물이 내용적·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 명백·현존하는 해악·위험이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물을 규제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는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제는 특히 공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를 ‘악의적 편집’이라는 이유로 탄압하거나, 시민들의 패러디물, 풍자물 등의 각종 표현 행위를 규제하며 공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음.

#### 4. 결론

- 본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과중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위헌적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함.

<끝>